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제·개정 이력

제·개정일	내역
2016. 8.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제정
2019. 1.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사전점검 절차 의무화 폐지, 사후검증 대체 등)
2021. 12.	
2023. 1.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판단 기준 수립, 정보보호 공시 협의체 TF팀 구성 권고 등)

CONTENTS

Ⅰ. 총칙	 제도 개요 공시 항목 및 기준 이행 절차 및 혜택 공시내용 사후검증 	06 10 16 23
 II . 공시 내용 작성방법	1. 정보보호 투자 현황	28
	2. 정보보호 인력 현황3. 정보보호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1 51
	4.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53
 Ⅲ. 자주 묻는 질문·응답 [FAQ]		58
 첨부	[첨부 1]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부문 자산 분류표	62
	[첨부 2] 정보보호서비스 분류표	67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T 총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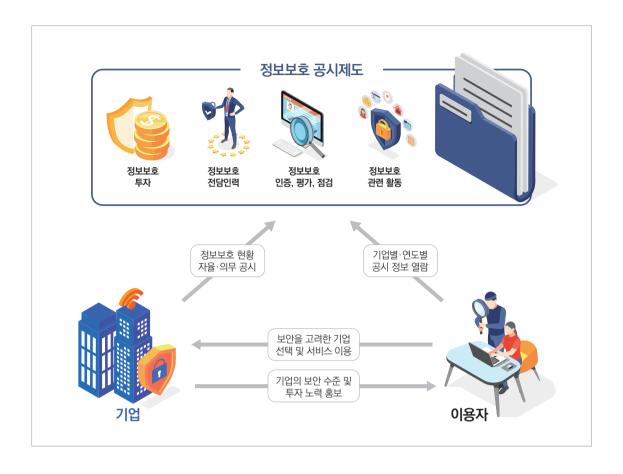
- 1. 제도 개요
- 2. 공시 항목 및 기준
- 3. 이행 절차 및 혜택
- 4. 공시내용 사후검증

T 총칙

1 제도 개요

┛ 목적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디지털 대란 등이 기업의 경제적 피해, 대외 신뢰도 저하, 이용자 불편 등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중요 연구개발 정보를 보유한 첨단기업, 사회 기반시설 등 모든 기업에 정보보호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됨.
 - ※ IBM 시큐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대상 분야 1위는 제조업(23.2%)으로 2020년 대비 34% 급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22.4%), 서비스(12.7%), 에너지(8.2%)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된 주요 정보이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알 수 없어 불충분한 정보로 서비스 이용, 투자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최근까지 많은 기업이 비용과 복잡성 등을 이유로 정보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사이버 공격 증가로 정보보호가 경영진의 핵심 이슈로 떠오름.
 - ※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2015년 대비 300% 증가한 10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용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 (주주) 기업의 잠재적 재무상태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를 확보함.
 - *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 징벌적·법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강화된 배상책임,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한 큰 재무적 변동이 발생 가능
 - **(이용자·국민)**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보호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함.
 - **(기업)**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등에게 정보보호 활동을 공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고 기업의 보안 투자 정도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

☑ 적용 대상

- (자율공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보호 산업법 제13조제1항)
 - ※ 정보통신서비스(유·무선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등), 쇼핑몰, 포털, 인터넷 뱅킹 등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영리·비영리 업체 모두 포함
- (의무공시) 사업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2항, 이하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준]

사업분야	▶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보통신망법」제46조
	▶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제3조의4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 제3조제1호
매출액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하여야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이용자 수	▶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조직의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 수행, 위험에 따른 대책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등 정보보안 관련 총괄 책임을 지는 임원이나 관리자급 구성원을 가리킴.(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참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제외 기준]

공공기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운영법」
소기업	▶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이(10~120억 원),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금융회사	▶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전자 금융업자	▶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 한국표준산업분류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함.

^{**} 이용자 수: 순방문자 수(Unique View: IP 기준 1일 방문자 수)

[※]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다. 「의료법」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자
 -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 1. 공공기관
 -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2 공시 항목 및 기준

☑ 공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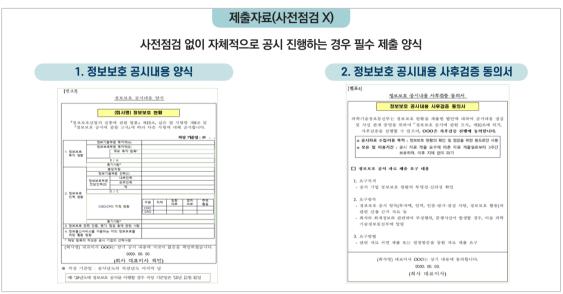
•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별표 3]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이하 '공시내용 양식')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호 인력 현황 등 4가지 항목별로 내용을 기재하여 최고경영자 확인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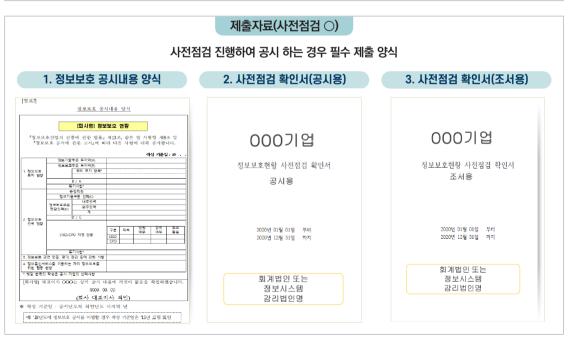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

	정보기	술부문 투자액(A)	정보보호부문 투자액(B)을 포함하여 산정					
1.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	호부문 투자액(B)	정보기술부문 투자액(A) 중에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소요된 투자액 산정					
		주요 투자 항목*	보안 솔루션 신규 도입 등 공시대상연도 정보보호부문 주요 투자사항 작성					
		B/A	0.0%(소수점	0.0%(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기, 100%를 넘을 수 없음)				
		특기사항*	정보보호 투자	현황에 대한 /	세부설명 또는	참고할 만한 시	항을 작성	
		총 임직원	공시대상 기업	의 내부인력				
	정보기술부문 인력(C)		정보보호부문 포함)	전담인력(D)을	를 포함하여 산정	형(내부인력, 외	주인력 모두	
	정보보호 부문 전담인력 (D)	내부인력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포함					
		외주인력	계약서 기반의 투입 공수로 인력 산정					
2. 정보보호 인력 현황		계	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 외주인력 합계					
		D/C	0.0%(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기, 100%를 넘을 수 없음.)					
	CISO/CPO 지정 현황		구분	직책	임원 여부	겸직 여부	주요 활동	
			CISO	상무	0	X	*건	
			СРО	이사	0	X	*건	
	특기사항*		정보보호 인력	현황에 대한 /	세부설명 또는	참고할만한 사	항을 작성	
3.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ISMS, ISO/IEC 27001 인증 등 공시대상연도에 유효한 사항 작성				사항 작성	
4.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디도스 모의훈 작성	련, 모의해킹,	정보보호 교육	, 정보보호 보험	험 가입 등 현황	

┛ 제출 내용

- 고시 및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공시내용 양식과 함께 사후검증동의서(고시 [별표 4])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에 제출 및 공개하거나,
 - 회계법인이나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고 확인서(공시용, 조서용 2종)를 공시내용 양식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함.
 - ※ 회계법인이나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부터 공시내용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받고 확인서(공시용, 조서용 2종)를 제출한 기업은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됨.





☑ 정보기술부문 판단기준

- '정보기술부문'이란 다음 각 활동을 위한 기업의 관리적·기술적 자산 및 서비스, 인력 및 조직을 말함.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것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를 사용하기 위한 간접설비를 이용하는 것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한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것
 - 시스템 및 서비스 성능을 최적화하고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운영하는 것
 - 정보보호부문 자산 및 서비스, 인력 및 조직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것
-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에 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소요된 모든 비용(공시대상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의 합계를 말함.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 발생주의는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 없이 거래나 그 밖에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고 표시하는 것을 말함.
 - ①인건비, ②정보처리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 ③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④정보기술서비스 이용료, ⑤정보기술 외주 용역비, ⑥정보기술 컨설팅 비용, ⑦정보기술 교육·훈련비, ⑧통신회선 이용료, ⑨기타 정보기술 관련 비용 및 자산 감가상각비 등
 - ※ 기업별 특성에 따라 비용원장 등에 표기되는 상세 계정명은 서로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

- (자산) 토지·건물·구축물·건설 중인 자산·차량운반구·인테리어 자산·각종 가구(의자 책상 등)·영업권·회원권 관련 비용 등은 투자액에 포함되지 않음.
- (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건물·시설 이용료, 건물·시설 공사비, 전기·전화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사업성 경비, 영업외비용 등은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에 포함되지 않음.
- 정보기술부문을 전담하지 않은 조직이 집행한 비용이라도 명백하게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면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에 포함됨.

[정보기술부문 항목별 세부 내용]

항목	세부 내용
인건비	•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내부인력(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의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등 관련 경비 일체 ※ 계열회사의 직원이 사내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계열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인건비가 아닌 외주용역비로 처리함.
정보처리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	•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임차(리스)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소모품 교체 비용 포함)
정보기술서비스 이용료	•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용, 기술이전·이용료, 정보이용료, 특허 사용료, 정보보호관제·인증· 재해복구 등 정보보호서비스 이용료 포함)
정보기술 외주 용역비	• 외부 주문 또는 제휴 등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여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정보기술 컨설팅 비용	•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문·점검·분석·평가·인증· 심사·연구·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감리비, 국제표준인증심사비, 품질인증심사비 등 포함)
정보기술 교육·훈련비	•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교육, 직무훈련·연수 및 회의·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통신회선 이용료	•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보의 송·수신과 정보처리시스템 간 접속·연계를 위하여 정보통신 사업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 포함)로부터 전용회선 등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재해복구센터용, 디도스 공격 대응용 통신회선 이용료 등 포함)
기타 정보기술 관련 비용 및 자산 감가상각비 등	• 기타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및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유·무형자산 등의 당기 감가상각비 일체

유의사항

• '정보기술부문'은 '정보보호부문'을 포함함. 따라서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정보보호부문 투자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정보기술부문 관련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부 인력*읔 맠함.
 - * 내부인력은 입사·퇴사·인사 이동일을 기준으로 일수 계산한 월평균 인력 수를, 외주인력은 계약상 투입공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인력 수를 계산함,
 - 임직원 중 내부 규정에 따라 IT 기획·개발·운영 등 정보기술부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 정보기술부문을 전담하지 않은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정보기술부문 업무만을 전담하는 근로자(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실제 정보기술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면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인정)
 - 외주인력 중 공시대상기업의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하는 근로자

☑ 정보보호부문 판단기준

- '정보보호부문'이란 다음 각 활동을 위한 기업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자산 및 서비스, 인력 및 조직, 인증·평가·점검, 내·외부 활동을 말함. 다만, 인력 및 조직에서 기업의 출입통제, 보안경비 등 물리보안 관련 인력은 제외함.
 -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 그 밖에 사이버 안전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운영하는 것
 -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에는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관리적 수단), △암호기술, 접근통제, 백업체제 등(기술적 수단), △출입통제, 시건장치, 장비고도화 등(물리적 수단)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 있음.
-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정보기술부문 투자액'과 동일하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에 의하여 정보보호부문에 소요된 모든 비용(공시대상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의 합계를 말함.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인건비, ②정보보호 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 ③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비, ④정보보호서비스 이용료, ⑤정보보호 외주 용역비, ⑥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⑦정보보호 교육·훈련비, ⑧정보보호 관련 통신회선 이용료, ⑨기타 정보보호 관련 비용 및 자산 감가상각비 등
 - ※ 기업별 특성에 따라 비용원장 등에 표기되는 상세 계정명은 서로 다를 수 있음.

[정보보호부문 항목별 세부 내용]

항목	세부 내용
인건비	• 정보보호부문과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내부인력(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의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등 관련 경비 일체
정보보호 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	• 데이터 백업, 자료유출방지,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 시스템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임차(리스)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비	• 정보보호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보호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정보보호 시스템 관련 소모품 교체 비용 포함)
정보보호서비스 이용료	• 정보보호관제·인증·재해복구 등 정보보호서비스 이용료,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정보보호기술 이전·이용료 등 정보보호 시스템 및 정보보호부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정보보호 외주 용역비	• 정보보호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여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 정보보호 표준 인증심사, 모의해킹 훈련 등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점검·분석· 평가·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정보보호 교육·훈련비	• 정보보호부문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교육, 전담인력 직무훈련·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정보보호 관련 통신회선 이용료	• 재해복구센터 운영, 디도스 공격 대응 등과 관련하여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기타 정보보호 관련 비용 및 자산 감가상각비 등	• 기타 '정보보호부문'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및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유·무형자산 등의 당기 감가상각비 일체

-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정보보호부문 관련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부 인력*을 말하며, 기업의 출입통제·보안경비 등 물리보안 관련 인력은 제외함.
 - * 내부인력은 입사·퇴사·인사 이동일을 기준으로 일수 계산한 월평균 인력 수를, 외주인력은 계약상의 투입공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인력 수를 계산함.
 - 임직원 중 내부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 정보보호부문을 전담하지 않은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정보보호부문 업무만을 수행하는 근로자
 - 외주인력 중 사업자의 정보보호부문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하는 근로자

3 이행 절차 및 혜택

☑ 한눈에 보는 정보보호 공시 이행 절차

순서		내용				
1. 협의체(TF팀) 구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주관하에 정보보호, 정보기술, 재무회계, 인사관리, 공시 담당자 등으로 '정보보호 공시 협의체(TF팀)' 구성·운영					
		▼				
	무자 공시대상연도의 별도기준 감사보고서, 합계잔액 시산표, 자산대장, 비 외주용역비 내역,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관련 인건비					
2. 자료 준비	인력	조직도,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직무기술서, 업무분장표, 외주인력 현황				
	인증, 평가, 점검	정보보호 관련 인증서, 결과보고서, 점검결과서 등				
	활동	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 교육, 캠페인 등 활동 계획 품의서, 결과보고서 등				
		▼				
3. 총 임직원 수 산정		공시대상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1~12월)의 간이세액 월평균 산정				
		▼				
4. 정보기술부문 /정보보호부문 인력 산정	조직도, 직무기술서, 업무분장표, 외주인력 현황 등을 통하여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 및 외주인력 산정					
		▼				
5. 정보기술부문 /정보보호부문 투자 산정	①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②비용(자산과 인건비 제외), ③인건비(내부인력)의 합계로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액 산출					
		▼				
6. 인증, 평가, 점검 및 정보보호 활동 현황 증적 취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증적 자료 및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증적 자료를 확인하여 하나의 파일에 취합					
		▼				
7. 정보보호 현황 서식 작성	위에서 작업한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액과 정보보호 활동 현황 등을 정보보호 현황 서식에 기입 ※ 모든 산출 작업 자료는 사후검증을 위하여 보관 필요					
		▼				
8. 최고경영자 확인	완성된 정보	로보호 현황 서식 및 사후검증 동의서에 정보보호 공시자의 최고경영자의 승인·결재 직인				
	<u> </u>					
9. 정보보호 공시 자료 등록·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확인					

유의사항

• 정보기술부문과 정보보호부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기술부문은 포괄적으로, 정보보호부문은 보수적으로 산정함.

☑ 정보보호 공시 이행 절차

(1) 협의체(TF팀) 구성

•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련한 제반 자료 및 증빙을 수집·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주관하에 정보보호, 정보기술, 재무회계, 인사관리, 공시 담당자 등으로 '정보보호 공시 협의체(TF팀)' 구성·운영을 권고함.

[정보보호 공시 협의체 구성(안)]

구분	륃	세부 역할				
	CISO • 정보보호 공시 협의체 총괄 업무 수행					
정보보호	• 정보보호부문 인력, 자산, 투자내역 분류 및 정확성 검토 실무자 • 정보보호 인증·평가·검사 및 활동 내역 제공 • 정보보호 공시 이행 및 후속조치 관련 대응					
정보기술 • 정보기술부		• 정보기술부문 인력, 자산, 투자내역 분류 및 정확성 검토				
재무회계 • 공시대상연도 비용원장, 자산대장 및 당기 감가상각 내역 제공		• 공시대상연도 비용원장, 자산대장 및 당기 감가상각 내역 제공				
인사관리		전사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표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인력별 직무기술서, 급여 등 인건비 내역 제공				
공시 담당자		• 기업공시 담당				

(2) 자료 준비

• 모든 자료는 정보보호 공시대상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였거나 그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준비함.

공시 항목	세부 항목	필요 자료명(예시)	검토 내용	
	기초자료	• 별도기준 감사보고서, 합계잔액시산표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관련 계정과목 및 상세계정 확인	
트디 허하	비용	• 비용원장, 주요 거래 계약서, 산출내역서 등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유형별 금액 산정	
투자 현황	자산	• 자산대장, 구매계약서 등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자산별 당기 감가상각비 산정	
	인건비	• 연봉계약서, 급여대장 등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 확정 후 산정	

공시 항목	세부 항목	필요 자료명(예시)	검토 내용		
	총 임직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12월)	• 간이세액에 기입된 인원수를 12개월 평균으로 산정		
	정보기술부문/ 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인력 명단 개인별 업무분장표/직무기술서	 정보기술부문 담당인력 식별(전담/겸직여부 확인) 정보보호부문 담당인력 식별(전담/겸직여부 확인) 		
인력 현황	정보기술부문/ 정보보호부문 외주인력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외주 현황 및 계약서	정보기술부문 외주용역별 월평균 투입공수정보보호부문 외주용역별 월평균 투입공수		
	CISO/CPO 지정 현황	• 인사명령/지정신고서 • 대내외 활동 기록	 CISO 및 CPO의 임원 여부, 겸직 여부 확인 CISO 및 CPO의 대내외 주요 활동 현황(특기사항) 		
	정보보호 인증	• 정보보호 관련 인증 신청서, 인증서 등	• 인증명, 인증유효기간, 갱신여부 등 확인		
인증, 평가,	정보보호 평가	• 정보보호 관련 평가 신청서, 결과보고서 등	• 평가명, 평가유효기간, 평가 등급 등 확인		
점검 현황	정보보호 점검	• 정보보호 관련 점검결과서 등	• 점검명, 점검기관, 유효기간, 결과 등 확인		
	투자 활성화				
활동 현황	임직원 인식제고	. 하도 게히 프이나 경기나그나 드	• 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 교육, 캠페인		
	전담인력 관리	• 활동 계획 품의서, 결과보고서 등	등 내역 및 활동 횟수 확인		
	이용자 보호 활동				

(3) 정보보호 현황 작성 및 승인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주관하에 정보보호, 정보기술, 재무회계, 인사관리, 공시 담당자 등이 협업하여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의 [별표 3]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작성함.
 - 차후 사후검증 대상에 선정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보보호 현황 작성에 사용되었던 자료는 최소 1년 이상 별도 보관 또는 기록이 필요함.
- 정보보호 공시자의 최고경영자는 확정된 정보보호 현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결재함.
 - 최고경영자의 승인·결재를 통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는 정보보호 현황은 기업의 책임하에 제공되는 사항임.

(4) 정보보호 공시 자료 등록・수정

- 매년 6월 30일까지 최고경영자가 승인·결재한 정보보호 현황['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 + 사후 검증동의서' 또는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 + 사전점검확인서(공시용) + 사전점검 확인서 (조서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에 등록함(필수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한 자료 또는 기업이 입력한 수치에 누락이나 오기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필요
- * 공시 기업 회원가입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 안내서' 참고
-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작성한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 자율공시시스템(KIND, 공시유형: 자율공시/정보보호)에 정보보호 현황을 등록할 수 있음(선택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6월 말까지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제도 이행 혜택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수수료 할인(자율공시에 한함)

-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경우에는 공시 시점부터 1년 내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또는 ISMS-P) 인증심사(최초/갱신/사후심사) 수수료 30% 할인 가능함.
 - 인증심사 수수료 산정 내역에서 '수수료 감면'란에 있는 정보보호 공시기업을 선택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음.
 - ※ 2023년 3월 1일에 정보보호 공시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경우, 혜택 효력은 2024년 2월 말까지 유지되고 효력 기간 안에 진행하는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에 모두 할인 혜택이 적용됨.

법적 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9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수수료 할인) ① 법 13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포함) 수수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정보보호 공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른 공시일 것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할인은 제5조제2항의 이행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진행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의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등에 대한 인증 수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수수료의 산정) ①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의 인증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2.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
 - 4. 그 밖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의 표시(자율·의무공시)

• ISMS 인증을 획득하였거나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AA 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마크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별도로 표시하여,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음.

[전자공시시스템-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표시(예시)]



(3)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단체의 선정(자율·의무공시)

- 공시 성실성 및 다양한 정보보호 노력 평가를 통하여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단체를 선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표창을 수여함.
 -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시내용의 사후검증 대상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단체에 대하여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별도 우대 표시를 할 수 있음.

[전자공시시스템-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단체 표시(예시)]



법적 근거

-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공시를 한 경우에는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표시를 부여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
 - 2.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8조(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단체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정보보호 공시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각호의 혜택을 제공할수 있다.
 - 1.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 또는 단체 증서 발급
 - 2.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 내 별도 우대 표시
 - 3. 제10조에 따른 공시내용의 사후검증 대상 면제
 -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법인에 대한 혜택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연계

• K-ESG 가이드라인 사회 영역 정보보호 범주의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항목 요건 일부 충족

[K-ESG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74	분류번호		영역			범주			
구분	S-8-1			사회			정보보호		
항목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항목 설명	정보자산 해킹, 네! 체계를 갖추고 있는 • 정보보호 최고책임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의 안정성 이슈가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자산 해킹, 네트워크 침입 등의 외부공격과, 물리적/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선임,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모의해킹 등 취약성 분석, 정보보호 공시 이행 (의무 또는 자율), 정보보호 시스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 							
성과 점검	[데이터 원천] 정보보								
점검 기준	요건1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급 구성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 요건2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제3자(또는 규제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 요건3 모의해킹 등 외부 공격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4 정보보호 공시(의무 또는 자율)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요건5 정보보호 시스템의 손상 또는 외부공격 등 정보보안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4 공시내용 사후검증

☑ 개요

- 정보보호 공시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하 'KISA')을 통하여 공시 이행 기업의 공시 주요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음.
 - 다만, KISA 사전점검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회계법인이나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부터 공시내용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받고 사전점검 확인서(공시용, 조서용 2종)를 제출한 기업은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됨.

법적 근거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0조(공시내용의 사후검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회계법인 및 정보시스템감리법인으로부터 공시내용 사전점검을 받고 사전점검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한 법인은 사후검증에서 제외한다.

☑ 사후검증 절차

(1) 사후검증 점검단 구성

• 사후검증 점검단은 공시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보보호 현황 자료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구성·운영함.

(2) 사후검증 대상 선정

-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여 사후검증 대상이 되었음을 통보하고 일정을 협의하여 검증을 진행함.
 - 사후검증은 기업의 협조를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업이 정확하고 쉽게 정보보호 현황을 산출하도록 행정지도하기 위함이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3) 사후검증 실시

• 정보보호 현황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자료를 기초로 기업이 「정보보호 공시에 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하여 KISA에 제출함.

[정보보호 공시 사후검증 준비 자료]

1.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투자 현황

- 1) 정보보호 공시 투자 현황 산출자료 일체
- 2) 별도기준 감사보고서
- 3) 합계잔액시산표
- 4) 비용원장 원본: 공시대상연도 회계결산 완료된 자료
 - 외주비 관련 상세 자료: 정보기술부문 또는 정보보호부문 관련 외주비 내역(기안, 계약서 등)
- 5) 자산대장 원본: 공시대상연도 회계결산 완료된 자료

2.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전담인력 현황

- 1)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전담인력 현황 산정 및 인건비 비용 산정 근거자료(내부인력, 외주인력 포함)
 -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전담인력 입·퇴사일 정보
 -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전담인력 R&R 자료(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직무기술서)
 -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전담인력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자료
 -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외주인력(상주, 비상주) 외주인력 현황
- 2)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공시대상연도 전체 월별 간이세액 수)

3. 정보보호 인증, 평가, 점검

정보보호 인증, 평가, 점검 등에 대한 증적 자료 (예) ISMS인증, 클라우드 서비스인증, ISO 27001 등 인증서류

4. 정보보호 활동

정보보호 활동 증적 자료(정보보호 활동 증빙서류, 공식 기안 내용, 활동사진, 이미지 캡처본 등)

5. CISO/CPO 지정현황

직책, 임원 여부, 겸직 여부 등에 대한 증적 자료

- CISO/CPO 지정 및 자격증빙(위촉장, 지정신고서 등) 제출

^{*} 기타 사후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별도 요청 가능

[정보보호 공시 사후검증 기준]

구분	검증 기준
정보보호 투자 현황	• 인건비, 자산대장, 비용원장 등 투자액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검토(투자액의 20% 미만 오차 범위 허용)
정보보호 인력 현황	• 직무기술서, 조직도,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외주용역 계약서 등 인력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검토(인력의 20% 미만 오차 범위 허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공시자가 취득한 정보보호 인증, 평가, 점검에 대한 인증서, 평가서, 점검결과서 확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 정보보호 활동 증빙자료(활동사진, 회의록, 활동 결과물 등) 검토

(4) 사후검증 결과 확인 및 조치

- 점검 결과에서 허위공시 등으로 판단한 경우는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정정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사실을 공시한 경우, 별도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정정공시 등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시가 취소되는 경우, 공시 혜택은 취소되며, 따라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의 할인받은 금액도 반납하여야 함.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한 경우,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 위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II

공시내용 작성방법

- 1. 정보보호 투자 현황
- 2. 정보보호 인력 현황
- 3. 정보보호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4.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 공시내용 작성방법

1 정보보호 투자 현황

☑ 개요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관련 ①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②비용(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제외), ③ 인건비(내부인력)의 합계로 산출함.
 - 유·무형자산의 경우 자산대장 등을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당기 감가상각비를 투자액으로 산정함.
 - 비용의 경우 비용원장 등을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지급수수료·외주용역비 등 상세계정 중에서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관련 비용을 투자액으로 인정함.
 - 인건비는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인력에 속하는 내부인력(정규직, 계약직)의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의 합계를 말함.

[정보보호 투자 현황 준비 자료]

준비 자료	필요 내용	비고
조직도	• 공시대상연도의 조직도	정보기술/정보보호 조직 확인
별도기준 감사보고서	• 별도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잔액시산표	•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상세계정(예: 통신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등)	
공시대상 연도말 자산대장	• 유·무형자산으로 등록한 자산의 감가상각계상 대장(자산명, 취득일, 취득가액, 내용연수,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등 표시)	공시대상기간 감가상각비
공시대상 기간의 비용원장	• 공시대상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비용원장(전표일자, 계정명, 부서명, 적요, 금액 등 표시)	

준비 자료	필요 내용	비고
외주용역비 내역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외주비 상세내역(기안서, 계약서 등)	정보기술부문/ 정보보호부문 용역비 산정
정보기술부문/ 정보보호부문 인원 관련 인건비	 공시대상연도에 근무한 정보기술/정보보호 인력의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합계 	

☑ 자산 투자 현황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액 집계표]

구분	정보기술부문 투자액*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①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② 비용(① 및 ③ 제외)		
③ 인건비(내부인력)		
합계		

^{*}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반드시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을 포함하여 산정함.

- 별도기준 감사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이하 '시산표')를 입수하여 자산별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시산표에서 유·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등 상각대상 자산을 검토함.
 - 별도 감사보고서상 유·무형자산별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비 총합계와 시산표상 상세 유·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총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함.
 - ※ 별도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회사의 사업보고서 조회 후 첨부란의 '감사보고서' 선택.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추출
 - ※ 시산표는 과목 중 유·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비(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포함) 추출
 - 시산표상 재무상태표 유·무형자산의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관련 자산과 △제외 자산*을 분류 구분함(아래 시산표 예시 참고).
 - * 시산표상 자산명 자체가 제외 대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자산계정 특성상 정보기술·정보보호·제외 자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자산대장에서 상세 검토
 - 제외대상 자산으로는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인테리어 자산, 차량운반구, 각종 가구(의자 책상 등), 영업권, 회원권 등이 있음.
 - 회계팀에 유·무형자산 상각대장 및 사용권자산 상각대장 중 시산표상 제외자산 이외의 나머지를 요청하거나, 전체 상각대장 요청 시 제외자산은 별도로 분류함.

[감사보고서 주석(예시)]

10. 유형자산:

가.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및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	계
기초장부금액	7,800,435	19,087,134	43,749,609	13,994,259	1,535,487	86,166,924
- 취득원가	7,801,259	28,992,675	146,778,918	13,994,259	3,535,985	201,103,096
- 감가상각누계액	-824	-9,905,541	-103,029,309	-	-2,000,498	-114,936,172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5,295	4,385,819	31,501,402	1,339,173	607,076	37,838,765
감가상각	-406	4 -1,614,006	-18,016,803	-	-532,894	-20,164,109
처분ㆍ폐기	-24,319	-5,104	-108,737	-	-5,402	-143,562
기타	-11	-12,027	9,842	-25,930	-2,867	-30,993
기말장부금액	7,780,994	21,841,816	57,135,313	15,307,502	1,601,400	103,667,025
- 취득원가	7,782,125	33,244,532	175,487,461	15,307,502	4,022,759	235,844,379
- 감가상각누계액	-1,131	-11,402,716	-118,352,148	-	-2,421,359	-132,177,354

11. 무형자산:

가.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백만원)

				(5	<u> 연기 : 엑만권/</u>
구 분	산업재산권	개발비	회원권	기타	계
기초장부금액	1,195,319	371,392	194,277	5,241,660	7,002,648
개별 취득	286,963	_	4,329	3,610,518	3,901,810
내부개발에 의한 취득	-	193,708	-	-	193,708
상각	⑤ -218,754	-321,608	-	-1,851,408	-2,391,770
처분•폐기	-42,031	-	-	-557	-42,588
손상(환입)	-	-	-3,471	-	-3,471
기타	4,744	-6,582	-	-1,043	-2,881
기말장부금액	2 1,226,241	236,910	195,135	6,999,170	8,657,456

12. 사용권자산 가. 사용권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및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계
기초장부금액	2,593	144,615	_	188,236	405,873
일반취득	91	446,071	75,103	992	451,828
감가상각	-405	-80,085	⑥ −36,065	-9,617	-126,172
계약의 해지	_	-28	_	-1,131	-1,159
기타	_	-45		_	-45
기말장부금액	2,279	510,528	39,038	178,480	730,325

[시산표(예시)]

		<시산표 >				
*기준년도	*회계계정글	*회계계정명	-	금액	*구분	비고
2021	12301000	토지	_	7,782,125	BS	제외
2021	12302000	건물		32,244,532	BS	제외
2021	12303000	감가상각누계액		-10,902,716	BS	제외
2021	12304000	구축물		1,000,000	BS	제외
2021	12305000	감가상각누계액	1	-500,000	BS	제외
		···.			•	
2021	12306000	산업재산권		2,452,482	BS	검토
2021	12307000	상각누계액	(2)	-1,226,241	BS	검토
		···.				
2021	12308000	사용권자산_기계장치		75,103	BS	검토
2021		감가상각누계액	<u>(3)</u>	-36,065	BS	검토
					ı	
2021	54410010	감가상각비_건물	Γ	-1,604,006	PL	제외
2021	84410010	감가상각비_구축물	4	-10,000	PL	제외
2021	54410030	무형자산상각비_산업재산권		⑤ -218,754	PL	검토
2021	83241000	감가상각비_사용권자산(기계장치	1)	⑥ -36,065	PL	검토

유의사항

- 검토 대상 자산 상각대장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무형자산 상각대장 및 사용권자산 상각대장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이 시산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산출 필요
- 정보기술·정보보호 대상 설비 등의 임차 관련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액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의 임차 관련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외함.
- 사용권자산 중 검토 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자산대장 검토 시 별도 산정되므로 비용원장 검토 시 관련 비용 중복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유·무형자산 상각대장 및 사용권자산 상각대장상 자산명별로 △정보기술부문, △정보보호부문,
 △제외자산을 분류하고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으로 분류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투자액으로 확정
 - 정보보호부문 자산에 대한 투자액 산정 시 정보보호 전용 제품만을 인정하고 있어, 정보보호 기능을 별도로 분리·산정할 수 없는 유형자산의 투자금액(감가상각비)은 정보보호부문 투자로 인정하지 않음.

유의사항

- 정보보호부문 자산이 다른 자산의 부속품으로 포함되어 자산대장상 별도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정보보호부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산표상 동일한 기계장치 계정이더라도 자산대장상에서는 자산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제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보보호부문 자산이 회사의 자산 분류 정책에 따라 다른 자산의 부속품으로 포함되어 자산대장상 별도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은 정보보호부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자산(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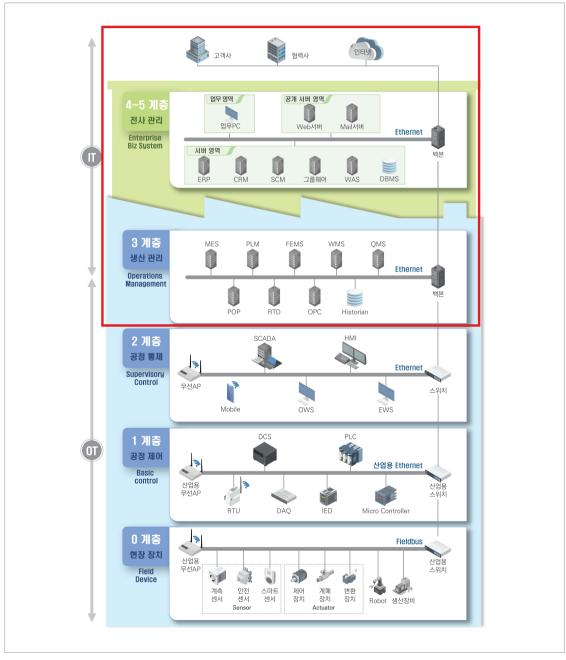
정보기술부문 자산 인정	• 사용부서와 관계 없이 회사 내 모든 PC와 부속장치,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TV(모니터 대용), 의료정보시스템, 원격회의 시스템(소프트웨어)스캐너, 태블릿 등 [첨부 1] 참고
	• 문서파쇄기(세단기), 노트북 케이블 락, 모니터 보안경, 보안 USB 등
정보보호부문 자산 인정	• 물리적 보안 제품(CCTV*, 바이오인식, 접근제어, 알람모니터링 등) * 본사에서 통제·관리하는 시스템 및 전산실 보안용 설비는 정보보호투자로 인정하나, 단순 대리점, 공장 등 출입 감시용 및 단순 판매 목적은 제외(정보보호 자산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음.)
	• 재해·재난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대비하여 구축하는 백업 서버 등의 재해복구시스템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 정보보호 제품
저나기스비므	• 영상·음향장비(전산실 외), 조명장비, 의료기기 등
정보기술부문 자산 불인정	• 전국적으로 대리점 또는 지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 및 유통사의 본사 외 점포 소유 자산(POS 등)
정보보호부문 자산 불인정	• 물리적 망분리를 위한 PC 등 정보보호 기능이 일부 내재된 제품 및 정보보호 전용제품이 아니지만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 * 물리적 망분리를 위한 PC 등은 정보보호 자산은 아니지만 정보기술에는 포함

[자산 상각대장 분류(예시)]

	자산		취득	감가	감가	자산분류		
자산명	계정	취득일	가액	상각비	누계액	정보 기술	정보 보호	제외
노트북	공기구비품	2022. 1. 1.	1,000	500	500	0		
서버	공기구비품	2020. 12. 31.	5,000	1,000	2,000	0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	무형-소프트웨어	2021. 6. 30.	200	40	60	0		
스위치	비품-전산장비	2019. 1. 1.	500	100	400	0		
방화벽	비품-전산장비	2020. 9. 1.	600	120	280	0	0	
DB암호화	무형-소프트웨어	2021. 5. 1.	300	60	100	0	0	
본사건물	유형-건물	1990. 1. 1.	10,000	250	8,000			0
	합계		17,600	2,070	11,340			

- 스마트공장* 등 Operation Technology(이하 'OT')의 경우 정보보안 대상범위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사관리 및 공장별 생산관리체계까지의 자산(하드웨어·소프트웨어)만을 정보기술부문 또는 정보보호부문으로 판단함.
 - *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개발부터 양산까지,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제조 관련 모든 과정을 말하며, 응용 시스템뿐 아니라 현장 자동화와 제어자동화 영역까지 공장 운영의 모든 부분을 포함함.

[스마트공장 내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자산(예시)]



※ 스마트공장 사이버 보안 가이드(2019. 12.), 스마트공장 보안모델(2020. 12.) 참조

☑ 비용 투자 현황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액 집계표]

구분	정보기술부문 투자액*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①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② 비용(① 및 ③ 제외)		
③ 인건비(내부인력)		
합계		

^{*}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반드시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을 포함하여 산정함.

- 자산 투자 현황 산출방법과 마찬가지로, 별도기준 감사보고서와 시산표의 계정과목별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시산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이하 '판관비') 항목 중 정보기술 부문/정보보호부문 관련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 상세계정을 검토함.
 - 기업의 회계계정 분류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포함될 수 있는 상세계정으로 통신비, 지급임차료, 전산유지비, 전산용품 구입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외주용역비, 보험료, 수선비, 교육·훈련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이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임.
 - 상세계정 중 판단이 어려운 계정은 비용원장의 적요 등을 검토하여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인건비성 경비(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와 감가상각비, 영업외손익(기타수익, 기타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은 제외함.
 - 인건비성 경비(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가 비용검토 시 제외되는 이유는 정보기술부문/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확정된 후 별도로 인별 인건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비용분류 항목에서는 제외함.

유의사항

- 영업외손익 중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은 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임대료수익, 배당금수익 등 성격이며,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이자수익, 이자비용, 외환손익 등 금융 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정보기술부문/ 정보보호부문과 무관한 항목으로 간주함.
- 매출원가 및 판관비 항목 중 식사비, 접대비, 교통비, 물류비, 잡비,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각종 마케팅 비용, 제세공과금, 대손상각비, 포장비는 제외함.
 - 정보기술부서 또는 정보보호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이더라도 위의 비용은 정보기술부문 또는 정보보호부문 투자금액으로 보지 않음.

- 시산표에서 계정이 확정되면 비용원장 추출 후 내역(계정, 적요, 부서 등)을 확인하여 정보기술 부문/정보보호부문으로 분류하며, 정보보호부문 투자는 반드시 정보기술부문 투자에 포함하여 산정함.
 - 실제 발생내용에 따라 분류하되, 적요가 불분명한 경우 정보기술부서에서 발생된 비용은 정보기술부문 투자로 분류하고, 정보보호부서에서 발생된 불분명한 비용일 경우 정보보호부문 투자로 보지 않음.
 - ※ 예를 들면, 정보기술부서에서 소모품비의 적요가 없어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할 경우 포괄적으로 정보기술부문 투자에 포함하고, 정보보호부서에서 발생된 소모품비이고 적요란이 불분명한 경우 정보보호부문 투자에는 포함하지 않음. 다만, 다른 증빙을 통하여 소명 가능할 경우 정보보호부문 투자로 인정함.

[비용 계정별 원장 분류(예시)]

전표일	상세계정	적요	사용부서	금액	정보 기술	정보 보호	제외
2022. 1. 3.	지급수수료	복합기 사용료	IT팀	XXX	0		
2022. 1. 4.	지급수수료	복합기 사용료	영업팀	XXX	0		
2022. 1. 4.	외주용역비	ERP 운영유지비(1월)	IT팀	XXX	0		
2022. 1. 5.	지급수수료	회계감사료	회계팀	XXX			0
2022. 2. 2.	외주용역비	ISMS 컨설팅 비용	보안팀	XXX	0	0	
2022. 2. 5.	소모품비	백신 사용료	보안팀	XXX	0	0	
2022. 2. 5.	소모품비	(빈 칸)	IT팀	XXX	0		
2022. 2. 5.	소모품비	(빈 칸)	보안팀	XXX	0	×	
2022. 2. 6.	통신비	전용회선료	IT팀	XXX	0		
2022. 3. 1.	소모품비	인쇄용지	총무팀	XXX			0
2022. 3. 2.	소모품비	인쇄용지	보안팀	XXX			0

^{*} IT팀에서 소모품비로 분류하였으나 적요에 내역이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정보기술부문 투자로 분류하고, 보안팀에서 소모품비로 분류하였으나 적요가 없을 경우 정보보호로 분류하지 않음.

유의사항-사용권자산 관련 임차료 분류

• 리스 회계처리 대상 지급임차료의 경우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결산시점에 리스부채와 지급임차료를 상계 처리함. 지급임차료 성격이 정보기술부문(또는 정보보호부문) 항목일 경우 차감된 지급임차료(대변금액 또는 음수의 차변금액)도 동일하게 분류하여 상계처리 되도록 함. 그 이유는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도 정보기술부문(또는 정보보호부문)으로 분류되므로, 리스부채 조정 관련 임차료비용이 차감되지 않을 경우 이중 계상될 수 있음.

(관련 분개)

- ▶ 지급임차료 지급 시
 (차변) 지급임차료 XXX / (대변) 미지급금 XXX
- 결산 시 지급임차료의 리스부채 차감(차변) 리스부채 XXX / (대변) 지급임차료 XXX

아래와 같이 지급임차료를 정보기술로 분류하였다면, 리스부채 상계처리 관련 지급임차료 마이너스 분개도 정보기술로 분류하여야 함.

전표일	상세계정	적요	사용부서	금액	정보 기술	정보보호
2022. 2. 1.	지급임차료	전용회선 임차료	IT팀	100,000	0	
2022. 3. 31.	지급임차료	리스부채상계-전용회선	IT팀	(100,000)	0	

[※] 리스부채 상계전표가 계약별(예: 전용회선 임차료과 같이 상세단위별)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 리스회계처리 관련 최초 비용발생 전표를 정보기술(또는 정보보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 외주 용역비의 경우, 용역 성격·내용 등을 파악하여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을 산정함.
 - 정보보호부문 관련 외주 용역비는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보안성 지속서비스* 및 유지보수 등이 있음.
 - * 보안성 지속서비스: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위협·사고분석, 보안기술 자문, 보안성 인증(KCMVP 등) 효력 유지 등
 - ※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서비스 기업 목록은 KISA 또는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ksecuri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하나의 계약에 정보기술부문과 정보보호부문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계약서 상세내역에 별도 구분 가능할 경우 분리할 수 있으며,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상세내역이 없을 경우 정보기술부문으로만 분류함.
 - ※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보보호 공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 정보기술서비스 이용대가'에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정보기술 부문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
 - * 예시: A사가 B호스팅 업체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하였고, B호스팅 업체의 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이 10%였다면 A사의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자체 정보보호 투자액에 100만 원(=1,000만 원×10%)으로 집계 가능
 - IDC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약서 또는 정산서에 정보보호 투자금액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정보기술부문과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으로 산정함.
 - * 예시: 정보기술부문(IT 인프라 운영)과 정보보호부문(보안관제)에 해당하는 업무가 계약서 상세내역에 공수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정보보호 부문에 공수비율만큼을 분류 가능함.

유의사항

- ▶ IDC의 코로케이션, 호스팅서비스는 정보기술부문으로 인정되나 단순 상면만 임대하는 파킹서비스 이용료는 인정하지 않음.
 - ※ 코로케이션: 네트워크접속+상면, 호스팅서비스: 서버+네크워크 접속, 파킹서비스: 상면만 임대

☑ 내부인력 인건비 투자 현황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액 집계표]

구분	정보기술부문 투자액*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①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② 비용(① 및 ③ 제외)		
③ 인건비(내부인력)		
합계		

^{*}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반드시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을 포함하여 산정함.

- 인건비는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인건비성 경비로 구성됨.
 - 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된 회계기간 중의 비용으로 내부인력의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이 확정된 후 인별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4대보험 등) 등의 합을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로 봄.
 - 급여·상여 등은 인별 연봉계약서 또는 급여대장과 일치하여야 하며, 손익계산서상 비용(인건비)으로 처리된 항목이어야 함. 연말정산 시 지급받는 총급여 자료에 기초할 경우, 급여담당은 공시대상 회계기간의 귀속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공시대상 회계기간과 회계상의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 회사 지급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급여담당자에게 공시대상연도 (1~12월)에 반영된 급여만을 추출하도록 요청이 필요함.

[개인별 인건비 산출내역(예시)]

사번	이름	부서	업무	급여	상여	퇴직 급여	4대보험 (회사)	기타
1975012	김XX	IDC센터	프로그램	65,000	7,400	3,400	1,500	500
2005145	0 XX	보안팀	보안관제	45,000	4,340	1,340	1,200	100
:	:	:	:	:	:	:	:	:

[인건비 집계내역(예시)]

투자구분	대상자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	총인건비	
구시구군	수	(a)	(b)	(c)	4대보험	기타 복리	(a+b+c+d)
정보기술	33	000	000	000	000	000	0,000
정보보호	8	000	000	000	000	000	0,000
합계	41	000	000	000	000	000	0,000

- 급여담당의 협의체 참여자는 충분한 정보보호 공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직접 급여담당자가 관련 인건비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총액만을 집계에 사용함. 추후 사전 또는 사후점검 시 상세 자료를 점검인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가 필요함.
 - 인별 급여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의 조직이 정보기술 조직과 정보보호 조직이 전담하고 있고, 회계상 부서별 인건비가 구분될 경우 비용원장상 부서별 인건비를 기초로 투자액을 산정할 수 있음.
- 당기 중 인별 업무분장이 변경되어 정보기술, 정보보호 업무가 변경될 경우 인건비도 업무투입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투자액에 반영함.

[인별 업무분장 변경 시 인건비 분류(예시)]

• XXX님은 인건비가 52,000천 원, 4월 14일 IT 부서에서 정보보호 부서로 업무변경되고, 9월 10일자로 총무팀으로 업무변경 시 정보기술과 정보보호의 인건비 투자액 산정

이름	부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연평균	정보기술	정보보호
	IT부서	1.000	1.000	1.000	0.457									3.467	0.289	0	
홍길동	정보보호				0.533	1.000	1.000	1.000	1.000	0.323				4.856	0.405	0	0
	총무팀									0.677	1.000	1.000	1.000	3.677	0.306		
7	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00	1.000		

(인건비 배부의 정확성을 위하여 계상 인원수는 최대 소수점 사용)

- 4월 인원수: 4월 14일 부서이동 시 IT 부서는 0.467(14÷30). 정보보호부서는 0.533(16÷30)
- 9월 인원수: 9월 10일 부서이동 시 정보보호부서는 0.323(10÷31), 총무팀은 0.677(21÷31)
- XXX님의 인건비 배부

구분	연평균	금액	수식(인건비 X 부문연평균 인원수 / 연평균 인원수)
정보기술	0.694	36,064,516	52,000,000 X (0.289+0.405) ÷ 1
정보보호	0.405	21,042,294	52,000,000 X 0.405 ÷ 1
제외	0.306	15,935,484	52,000,000 X 0.306 ÷ 1

- 정보기술: 정보보호가 포함된 연평균 인원수 이용

유의사항

- 회계상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등으로 인건비가 포함될 경우 자산화 후 자산의 사용시점에 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되면서 자산의 투자로 인식되므로 관련 인건비는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에서 제외함.
 - ※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회사가 그 인원의 인건비를 비용 회계처리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관련 인건비는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인건비로 보지 않음. 그 이유는 개발 완료될 경우 무형자산(소프트웨어)으로 대체되고, 관련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비는 정보기술·정보보호 투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인건비가 정보기술·정보보호 투자로 이중 계산될 수 있음.
- 회계상 경상연구개발비로 인건비가 포함될 경우 경상연구개발비의 성격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투자로 산정되므로, 관련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의 투자에서 제외함.
 - ※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인건비와 경비 등을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할 경우, 경상연구개발비의 성격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인건비가 아닌 경상연구개발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이중 계상되지 않음.
- 확정된 내부인력이 확정급여형(DB형)인지 확정기여형(DC형)인지 퇴직보험의 유형을 확인하여 인별 퇴직급여를 산정함.
 - 확정기여형인 경우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를 사외적립과 동시에 비용처리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퇴직급여로 산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해연도 기여만큼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동시에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입금액만큼 퇴직급여로 계상함.

- 확정급여형인 경우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는 계리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하며, 회계부서 담당자와 급여담당자가 협의하여 아래 항목을 퇴직급여로 산정
 - ※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식으로 인별퇴직급여 산정(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감액 기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회사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됨.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퇴직급여로 계상함.

- * DB형일 경우 퇴직급여 구성항목: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확정급여부채에 대한 이자원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원가
- * DB형일 경우 퇴직급여 제외항목: 투자는 당기손익으로 구성된 항목에 한하므로 자본항목인 재측정요소 등은 제외

☑ 특기사항

• 정보보호 투자비중(%)에 대한 업종별·규모별 착시효과 완화 등을 위하여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또는 그 밖의 노력 사항을 서술형으로 작성 가능(자율기재 사항)

[예시]

- ① 제조기업으로 개인정보 미취급 등의 사유로 다른 분야 대비 투자 금액이 낮으나 ○○시스템 도입으로 랜섬웨어 등 공격으로부터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함.
- ② 신산업 R&D 등을 위한 IT 투자 규모 확대로 공시해당연도 정보보호 예산 비율이 낮아 보이나, 투자 금액 규모로는 전년 대비 ○○% 상승함.
- ③ 당사는 동종업계 평균 투자액 대비 ○○억 원 이상 추가 투자하여 IT 업계 수준으로 랜섬웨어·해킹 등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함.
- 국내외 관계사가 정보보호 시스템 등을 공동 이용하는 등의 상황으로 국내 정보보호 투자액을 별도로 구분 및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특기사항' 항목을 통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작성하여야 함.

[예]

- ① A회사의 경우, 국내외 관계사가 정보보호 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예산의 약 ○%를 정보보호 예산으로 투자 중임.
- ② 제로트러스트 프로그램 확장, 오픈소스 보안 강화, 보안 인력 양성 등 정보보호를 위하여 △년간 ○○○억 달러를 투자함.
- ③ 한국 내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사는 △△의 기간통신서비스와 정보보호 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어 정보보호 투자 현황 또한 그에 준함.

2 정보보호 인력 현황

☑ 개요

[정보보호 인력 현황 산출(예시)]

	구분	인원수	참고
총인	l직원(내부인력)	101.5명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월평균 간이세액
정보기술부문 인력(C)		43.5명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D) 포함 (내부인력, 외주인력 모두 포함)
	내부인력	2.0명	내부인력(정규직+계약직)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D)	외주인력	2.2명	외주인력(상주+비상주 등)
	계	4.2명	
D/C		9.7%	정보기술부문 인력(C)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D) 비율

- 정보기술부문 인력과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다시 내부인력과 외주인력으로 나누어 산출 하여 합산하며, 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은 정보기술부문 내부인력에 포함되고 정보보호부문 외주인력도 정보기술부문 외주인력에 포함됨.
-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인력(정규직, 계약직)과 외부인력(상주, 비상주, 사내파견, 외부전담)의 공시대상연도 인원으로 산정하고,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도 마찬가지로 정보보호부문 업무를 전담하는 공시대상연도 내부인력과 외주인력 인원으로 산정함.
- 내부인력은 조직도·업무분장표·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해당 자료를 통하여 내부 인력이 명확히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업무만을 하는지 확인이 필요함(내부인력 산정 후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산정하여 투자액에 포함).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업무와 그 외의 업무(총무·인사 등)를 겸직하는 경우는 정보기술 부문/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에서 제외함.
 - 정보기술부문 업무와 정보보호부문 업무를 겸직하는 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
 - 정보기술부문 업무와 그 외의 업무(총무·인사 등)를 겸직하는 인력은 제외함.

- 외주인력은 외주용역 계약을 검토하여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용역으로 구분하고, 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투입공수나 보고서 등에 표시된 투입공수를 해당 용역의 투입공수로 인정하여 월평균(총 투입공수/12)으로 산정함.
 - 외주인력 산정에는 장기·단기 상관 없이 모든 IT 관련 외주 용역이 포함됨.
 - 외주인력 인건비는 외주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부인력 인건비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할 필요 없음(비용원장에서 외주용역비를 정보기술 용역과 정보보호 용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투자액으로 산입함).
-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인력의 비율은 정보기술부문 전담인력과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을 각각 합산하고,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D)을 정보기술부문 인력(C)으로 나누어 산정함.

[정보보호 인력 현황 산식]

• 총 임직원(내부인력), 정보기술부문 인력,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①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월평균 간이세액), ②조직도, ③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직무기술서 또는 업무분장표 등이 필요함.

[정보보호 인력 현황 준비 자료]

준비 자료	필요 내용	비고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 공시대상연도의 월평균 간이세액(1~12월)	총 임직원 수 산정
조직도	• 조직별 직무기술	정보기술/정보보호 조직 확인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직무기술서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의 직무정보	정보기술/정보보호 직무 확인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업무분장표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의 부서, 직무, 입사일, 퇴사일 정보	정보기술/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인
상주·비상주 외주인력 현황	• 용역명과 월평균 투입공수(M/M)	외주용역 계약서, 계약내용 포함

☑ 총 임직원 산정

• 총 임직원 수는 정보보호 공시자의 내부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상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을 월별로 평균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 아래는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인원으로 산정함.

[총 임직원 수 산정(예시 1)]



• 법인의 본점 외의 지점, 영업소 또는 기타사업장(공장 등)이 별도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신고서)상 간이세액 인원수를 월평균하여 총 임직원 수를 산정함.

[총 임직원 수 산정(예시 2)]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본사	104	106	107	106	100	100	100	101	104	101	100	89	101.5
AXIA													50.2
B공장													255.5
총합													407.2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산정

(1)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

• 정보기술부문 내부인력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하며, 직무기술서상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전담(정보보호부문 업무 포함)하는 내부인력을 정보기술부문 내부인력으로 인정함.

[내부인력 요건]

구분			세부 내용
내부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
인력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약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무기계약직)의 경우, 일반계약직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지만 본래 소속이 계약직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인정함.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주요 업무]

부문	주요 업무	업무 예시
		• IT 전략 수립·관리 및 IT 관련 규정·지침 관리
		• IT 예산 및 자원계획 수립·관리와 배정·집행
		• IT 자원 도입 검토 및 구매 관리
		• IT 인력 인사·성과관리 및 교육 계획 수립·시행
	IT 기획 및 관리	• IT 아키텍처 정책표준 수립·관리 및 IT 아키텍처 현행화
	11221	• IT 프로젝트 관리 및 통합품질관리시스템 운영
		• 형상관리정책 수립·운영 및 프로그램 형상 관리
		• 테스트방법론과 테스트계획 관리 및 테스트품질관리
정보		• IT 감사 및 IT 감리 기획·실시 등
기술		• 전산개발 범위와 처리기능 정의, 개발 세부계획 수립
부문		• 시스템 상세업무요건 정의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데이터 분석
	IT 개발	• 입출력자료, 업무처리 단위별 프로그램, 오류코드 등 설계
	및	• 프로그램 구현 및 산출물 작성
	유지보수	• 테스트 수행
		• 프로그램 이행 및 시스템 적용
		•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IT 운영	• 메인프레임 운영체제, 스토리지 등 운영·보수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 서버 운영체제, 미들웨어, 스토리지 등 운영·보수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보수정비	• 네트워크 운영 및 네트워크 장애 관리

부문	주요 업무	업무 예시
		• 콜센터시스템 및 콜센터교환기 운영
		• 단말기, 자동화기기 등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단말기, 주변기기 등 업무용 전산기기 배정 설치·운영
		• 전산기기 자산 관리 및 장애 관리(보수정비 포함)
정보	IT 운영	• 단말기, 자동화기기, 인터넷, 콜센터 등 채널 통합시스템 관리·운영
기술 부문	및 보수정비	• 대내외 시스템 간 연계(인터페이스)·중계시스템 관리·운영
		• 전산센터(종합상황실 포함) 운영 및 전산백업·소산매체 관리·운영
		• IT 업무지속성계획 수립·관리 및 업무지속성 훈련 실시
		• 시스템 모니터링 등 IT 서비스 관리 시스템(ITSM) 운영
		• 센터집중처리·배치 처리, 보고서 추출 등 일괄전산작업 처리 등
		• 내부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정·지침 제·개정
		• 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정 <u>보보호</u> 기획 및 관리	• 정보기술부문 관련 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
		• 모의해킹, 디도스 대응훈련 등 비상대응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IT 내부 통제(법규준수 포함) 관리
		• 취약점 분석·평가 및 이행 계획 수립
		• 모의해킹, 디도스 대응훈련 등 비상대응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정보시스템 개발 시 정보보호 요구사항 정의
		• 정보보호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개선조치 이행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시험 운영
정보 보호	개발 및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소스 프로그램 이력 관리
부문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이관 및 통제절차 이행
		• 정보보호 아키텍처 유지관리
		• 취약점 분석·평가 시행
		• 정보기술부문 관련 보안성 검토
		• 모의해킹, 디도스 대응훈련 등 비상대응훈련 실시
		• 침해시도에 대한 실시간 보안 관제 및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정보보호	• 외부 직원 출입통제 및 노트북, USB 등 반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운영	• 침해방지·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시스템 접근 통제, 권한 관리 및 사용자 인증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 고객 정보 보호 및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등
		•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백업시스템 등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전담 내부인력 산정은 개인별로 직무를 파악하여 구분하며, 개인별 월평균 인력 수(공시대상연도에 입사·퇴사한 경우는 일할계산)를 산출하여 정보기술 부문/정보보호부문의 내부인력에 산입함.

[인력별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인력 현황(예시)]

조직명	직급	성명/사번	수행 업무	직무	직렬	입사일	퇴사일	정보 기술	정보 보호	제외
IT팀	부장	김○○	유지보수 총괄	IT				0		
IT팀	과장	박□□	시스템 모니터링	보안				0	0	
IT팀	사원	0 △△	장애 처리	IT				0		
IT팀	사원	정□□	장애 처리 및 인사 관리	IT 및 인사						0
:	:	:	:	:	:			:	:	

^{*} 입사일과 퇴사일은 공시대상연도에 근무한 이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월평균 인력 수를 산정할 수 있음.

유의사항

- ▶ 내부인력이 정보기술 업무와 정보보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정보기술부문 내부인력으로만 인정되고,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업무와 그 밖의 업무(총무, 인사 등)를 겸직하는 경우는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에서 제외함.
- 정보보호 공시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IT 기획·개발·운영·정보보호 등 정보기술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전체 인력을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전담부서 소속 인력이 아니더라도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업무를 전담(100%)하는 인력은 최고경영자 또는 임원급(CISO)이 확인(결재·서명 등)한 기업의 공식 문서(직무기술서 등)를 근거로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인력이 매월 동일한 인원으로 유지되지 않고 신규 입사, 부서 이동, 퇴사 등의 사유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12개월간의 월평균 인력 수를 사정함.
 - ※ 인력 수는 무한소수점으로 계산한 후, 최종 공시내용 양식 작성 시 소수점 한 자릿수로 반올림하여 산정 필요 [예: 정보기술부문 인력(소수점 한 자릿수)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내주인력 무한소수점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외주인력 무한소수점]

[인력별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월평균 근무일수 산출(예시)]

성명/사번 (A)	직무 (B)	직렬 (C)	입사일 (D)	퇴사일 (E)	월평균 근무일수	정보 기술	정보 보호	제외
김〇〇	IT		2011. 2 1.		1.00	0		
0	IT		2015. 2 1.		1.00			
박□□	보안		2021. 2 1.		0.92*	0	0	
0 <u></u>	IT		2018. 9 1.	2021. 9. 1.	0.67*	0		
정○○	총무		2020. 2 1.		1.00			0
:	:	:				:	: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 산정(예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정보기술부문	31.5	32	32	32	32	33	33	33	33	33	33	32.2	32.4명
정보보호부문	5.5	5	5	6	5	4	4	5	6	6	5	5.2	5.1명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 산정 방법(예시)]

- ▶ 월평균 근무일수는 일할계산으로 산출하며, 엑셀을 이용하여 산출한다면 ① (DAYS('2021-12-31', D3)+1)/365=334/365=0.92이고, ② (DAYS(E4, '2021-01-01)+1)/365=244/365=0.67와 같이 두 산술식을 이용하여 쉽게 월평균 근무일수를 산출할 수 있음.
- ▶ 정보보호부문 인원 중 1월 16일 입사하여 12월 5일 퇴사한 자가 있는 경우 1월에는 0.5(16/31)명으로 산정하며, 2~11월은 1명, 12월은 0.2(5/31)명으로 산정함. 또한 정보보호부문 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에도 포함됨.
- 내부인력이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외주계약에 따라고객사의 IT 서비스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직원(통상 계약서에 투입인력으로 확정된 경우)은 당사의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으로 포함하지 않음.
 - 다만, 특정 프로젝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기업 내부 IT 업무(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를 수행한 인력은 해당 기간만큼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인력에 산입할 수 있음(인건비도 해당 기간만큼 산입함).

(2)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외주인력

-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부문 외주인력은 기업에 상주·비상주 인력등을 모두 포함하며, 공시대상연도의 월평균 투입공수로 산정함.
 - 외주인력이란 기업과의 외부주문, 하도급 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에 소속된 상시 종업원으로서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도급근로자를 포함함.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2.~8. (생략)
-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 (생략)
-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11. 정의

- 1.~3. (생략)
-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 외주 용역계약을 통하여 정보보호 공시자의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상주·비상주 인력, 시스템 개발이나 보안 컨설팅 등의 단기 외주 용역 인력 등을 투입공수 기반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으로 산정함.
 - 1년 미만의 단기외주용역도 투입공수를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외주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

[예시]

• 계약서상 투입공수가 10명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10명 초과(백업 목적 등으로) 또는 미만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10명만을 인정함.

[외주용역별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산정(예시)]

공시	.l 기업	협력	용역명/	용역명/	용역명/	용역명/ 정보							월별 (인원수					
담당 부서	담당자	사명	수행 업무	기술	정보 보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팀	김00	B회사	일반 IT 업무	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C팀	0	B회사	보안 업무	0	0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C팀	0 △△	D회사	보안 관제	0	0	3	3	3	3	3	3	3	4	4	4	4	4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외주인력 산정(예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정보기술부문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4.5	14.5	14.5	14.5	14.5	13.9명
정보보호부문	3.5	3.5	3.5	3.5	3.5	3.5	3.5	4.5	4.5	4.5	4.5	4.5	3.9명

- 계약에 투입인력이 확정되거나, 일반 외주 및 SI, Shared Service* 제공자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투입공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주인력으로 산정이 가능함.
 - * Shared Service: IT 전문회사의 소유의 서버 및 프로그램이며, 구축 및 운영유지에 대한 권한이 있고, 서비스만 계열사가 이용하는 계약

[외주용역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 인력산정(예시)]

[예시 1] 공시대상회사의 외주인력을 제외하는 경우

판단기준

- 1) 제공대상서비스의 소유권은 IT 서비스제공자에게 있음(공시대상회사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소유권이 없음).
- 2) 제공받는 서비스는 투입인력 기반이 아닌 제공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됨(서비스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잠시 방문하는 외주인력은 공시에서 제외).
- 3) 계약서에 투입인력이 확정되지 않고, 서비스제공범위가 기재됨.

[예시 2] 공시대상회사의 외주인력을 포함하는 경우

판단기준

- 1) 운영대상 IT 자산의 소유권이 공시대상회사에 있음(외주회사는 공시대상회사의 IT 자산을 구축 및 운영 유지하는 용역 제공).
- 2) 제공받는 서비스는 투입인력 기반으로 결정됨(IT 자산은 공시대상회사에게 귀속되고, 운영인력만 외주회사가 제공).
- 3) 계약서에 투입인력이 기재됨.
- (예외) '예시 1'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외주업체, SI 업체 등이 서비스 이용자별 월평균 투입공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대상회사의 외주인력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인력에서 제외하여야 함.

☑ CISO/CPO 지정 현황

- 기업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직책, 임원 여부, 겸직 여부 및 대표적인 내·외부 활동 건수 등을 작성함.
 - '특기사항'을 활용하여 공시대상연도의 CISO/CPO의 정보보호 관련 대표적인 대내외 발표, 학술지 기고, 위원회 운영, 외부 자문, 자격 취득 등 상세 활동을 기재할 수 있음.

[CISO/CPO 지정 현황 작성(예시)]

0100 (000	구분	직책	임원 여부	겸직 여부						
CISO/CPO 지정현황		CISO	본부장	0	×	5건				
71028		СРО	실장	×	CIO	3건				
특기사항 CISO 주요 활동: △△제도 개선 자문위원 참여(○○. ○○.~○○. ○○.) CPO 주요 활동: ■ ■학술 발표(주제:)										

• CISO/CPO가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이 아닌 총무·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 포함되지 않음.

☑ 특기사항(선택)

• 정보보호 인력 비중(%)에 대한 업종별·규모별 착시효과 완화 등을 위하여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전담부서(팀) 편성 여부, 정보보호 인력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참고 사항을 서술형으로 작성 가능함(자율기재 사항).

[예]

- ① 당사의 정보보호 업무는 정보기술부문 인력이 겸임하여 수행하고 있어, 전담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음.
- ② 전문적이고 안전한 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보보호부문 인력을 자체 운영하지 않고, IT 전문기업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임.
- ③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겸직업무 구성으로 인하여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0명으로 기재하였으며, 물리보안 (출입통제 등)을 위한 업무도 △△명이 별도로 수행 중임.
- ④ 당사는 디지털전략 및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각각 편성하여 전담인력 XX명 배치하고,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노력함

- 국내외 관계사가 정보보호 시스템 등을 공동 이용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국내 정보보호 인력을 별도 구분 및 작성이 어려운 경우, '특기사항' 항목을 통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작성하여야 함.

[예]

- ① A회사의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 및 운영 중에 있음.
- ② 전 세계 ○○개 지역에서 ○○개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 ○○명의 정보보안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 위험을 대비함.
- ③ 한국 내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사는 △△에게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부문을 아웃소싱하고 있어, 전담인력의 규모와 수준이 △△에 준함.

정보보호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클라우드 보안(CSAP) 인증 등 기업이 취득한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주요 인증, 평가, 점검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작성함.
 -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공시내용 양식의 '3.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문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 ※ 국제인증 제도에는 ISO/IEC 27001. ISO/IEC 27017. CSA STAR. SOC 등이 있음.
- 정보보호 공시자가 취득한 정보보호 인증, 평가, 점검에 대한 인증서, 평가서, 점검결과서 등을 준비하고, 인증서별 유효기간과 발행기관 등을 정리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공시기간 내에 있을 경우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현황 목록으로 작성함.
- 인증의 범위는 법정 인증(의무, 임의)과 민간 인증이 포함되며, 민간 인증의 경우에는 표준 및 인증 요구조건 공개와 서면(시험보고서 포함)으로 요구조건 적합 사실을 보증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정보보호 인증, 평가, 점검 실적에 포함될 수 있음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예시)]

인증 종류	인증제도 설명	비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내
정보보호 준비도 등급 평가서	• 보안투자 비율 및 인력 조직 확충, 법규준수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AAA~B 5등급, 개인정보보호지표 만족 시 인증마크에 'P' 부여	국내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서(데이터보안)	• 기업·기관에서 중요 데이터나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데이터보안에 대한 기술요소 전반을 심사·심의하는 제도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암호화, 작업결재, 취약점 분석	국내
ISO/IEC 27001	•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	국외
ISO/IEC 27701	•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EU GDPR 등 전세계의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글로벌 개인정보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	국외
ISO/IEC 27799	•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의료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	국외
ISO/IEC 27017	•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	국외
CSA STAR	영국표준협회와 미국 클라우드시큐리티 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인증	국외
FedRAMP	•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평가, 인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된 연방 보안 인증 프로그램	국외
SOC	• 국제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국외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 평가, 점검 공시 작성(예시)]

공시 항목	공시내용
국내외 인증, 평가, 점검 현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유효기간: ○○○○. ○○. ○○.~○○○○. ○○. ○○.) - △△ 서비스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보증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 □□ 데이터 센터 각 운영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서비스 제공
	• ISO/IEC 27001 - 정보보호 수준의 지속적인 개선 및 이용자 요구사항 충족을 보장하는 국제인증
	• SOC 2, 3 -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안정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인증 * SOC 3의 경우, 국내에 ○○개 기관만 인증 획득

4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실적,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등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대내외 활동을 작성함.
-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 참여 등 협력 활동,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참여**,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등이 정보보호 활동에 해당함.
 - * KISA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위협정보의 수집·분석 및 공유 플랫폼(일반회원과 공유회원으로 구분)
 - ** KISA에서 민간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체계 객관적 점검과 임직원 보안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의훈련
 - *** Business Continuity Plan: 재난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 예방 대책, 사고 시 확산단계별 대응계획 등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활동 등 공시대상연도에 수행한 내·외부 활동도 공시 가능함.

구분	정보보호 활동 세부내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에 이행한 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메일, 홈페이지 화면 등을 근거로 작성함.
- 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연간 수행 횟수(수행 주기)를 표기하고, 각 세부 활동 건수를 집계하여 정보보호 활동 공시 자료를 작성함.
 - 정보보호 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내용 양식의 '4.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문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예시)]

구분	정보보호 활동 세부 내역	건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실적 및 정보보호 관련 활동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참여(일반 또는 공유회원)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국내외 정보보호 기업과 양해각서(MOU) 체결 정보보호 관련 수상 내역(ICT 대상, 공시 우수기업 지정) 사이버 위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콘퍼런스 참가(세션 발표, 전시 부스 설치 등)	6건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지원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자체 점검, KISA 주관 훈련 등) ※ 랜섬웨어, 디도스, 해킹 메일 등 모의훈련 유형과 내용, 주관기관 등 기재 임직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월별 임직원 보안의식 제고 활동 추진(정보보호의날, 자가진단 등) 임직원 대상 사내 정기 정보보호 교육과정 개설(상·하반기) 	4건
정보보호 전담인력 관리 활동	 사내 우수보안사례 발굴 및 내부 시상(월 1회) 정보보호 공모(모의해킹대응대회 등), 세미나 개최 등 지원 취약점 제보 및 보상제도 도입 	3건
이용자 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	정보보호 취약계층 대상 보안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3회) 이용자 참여형 정보보호 콘텐츠 마련 정보보호 생활 실천 수칙 마련 및 배포 대표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 내 보안 실천 수칙 게시(상·하반기 2회)	4건
계	17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III

자주 묻는 질문· 응답[FAQ]

Ш

자주 묻는 질문·응답[FAQ]



01 모든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 공시를 해야 하나요?

A

「정보보호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로 반드시 정보보호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라면 누구나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자율적으로 이행한 기업은 ISMS 인증 수수료 3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할인 미해당).



)2 의무대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매년 4월 중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대상(안)을 KISA 대표 홈페이지, ISDS 공지사항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게시 일정 변동 가능).

확인 후, 의무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의무 제외에 대한 소명자료를 안내 기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내용 검토 후 개별 회신하여 드립니다.

* KISA 정보보호 공시 담당자 이메일 주소: isds@kisa.or.kr



03 의무대상 기준 중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이용자 수에 대한 의무대상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 및 앱 등)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산정 기준은 전년도 10~12월의 순방문자수(UV)*의 일일 평균입니다.

* UV(Unique View): IP 기준 1일 방문자 수(동일 IP로 동일 일에 몇 회 방문 시 1명으로 산정)



글로벌 기업의 경우 공시 주체는 누구인가요?

글로벌 기업 본사 또는 국내법인 중 국내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이 결정됩니다. 의무공시 대상이 아닌 글로벌 기업도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운영 중 기업이 국내에 한정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정보보호 투자, 인력 수치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특기사항' 항목을 통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수정보보호 제품.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등도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나요?

우수정보보호 제품,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등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이를 기업 전체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평가는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수정보보호 제품,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품을 개발·구매한 비용은 정보보호부문 투자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보보호 공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영하는 ISDS에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보호 현황은 공시연도의 직전연도(공시대상연도)에 해당하는 회계 및 인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를 이행하고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SDS와 KIND 두 곳에 같이 공시를 해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영하는 ISDS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자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일 경우에는 ISDS·KIND에 각각 공시 가능하며, 원하는 곳 한 곳에만 공시도 가능합니다(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ISDS 필수 공시).



회계법인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사전점검은 필수인가요?



회계법인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사전점검 절차는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사전점검 유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가 서로 다른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점검을 받아 확인서 2종을 제출한 경우 당해연도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T 업무 턴키 위탁용역, Shared Service 등 IT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비용 및 외주인력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예시 1] 공시대상회사의 IT 비용은 포함하고, 외주인력은 제외하는 경우

	비용	외주인력
정보기술/정보보호	0	×

판단기준

- 1) 제공대상서비스의 소유권은 IT 서비스제공자에게 있음(공시대상회사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소유권이 없음).
- 2) 제공받는 서비스는 투입인력 기반이 아닌 제공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됨(서비스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잠시 방문하는 외주인력은 공시에서 제외).
- 3) 통상 계약서에 투입인력이 확정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범위가 기재됨.

[예시 2] 공시대상회사의 IT 비용과 외주인력을 포함하는 경우

	비용	외주인력
정보기술/정보보호	0	0

판단기준

- 1) 운영대상 IT 자산의 소유권이 공시대상회사에 있음(외주회사는 공시대상회사의 IT 자산을 구축 및 운영 유지하는 용역 제공).
- 2) 제공받는 서비스는 투입인력 기반으로 결정됨(IT 자산은 공시대상회사에게 귀속되고, 운영인력만 외주회사가 제공).
- 3) 통상 계약서에 투입인력이 확정됨.
 - (예외) '예시 1'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외주업체·SI업체 등이 서비스 이용자별 월평균 투입공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대상회사의 외주인력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인력에서 제외하여야함.



전용회선을 직접 구축도 하고, 타 사업자의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전용회선 구축 관련 자산 또는 임차 비용은 모두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에 포함되나요?

A

'전용회선'은 구축하는 경우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구축) 전용회선 설비를 직접 구축한 경우, 자산대장 상의 선로설비는 정보기술부문 투자에서 제외되고, 전송설비 부분만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으로 인정합니다.
- 2) (임차)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반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해당여부에 따라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에 포함되는 전용회선 임차비의 비중이 상이합니다. 일반사업자는 통신 서비스를 자사를 위해 이용·소비하는 경우로, 임차 비용 100%를 정보기술부문 투자로 인정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 서비스를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용회선을 임차하는 경우로, 비용의 50%를 전송설비로 간주하여 정보기술부문 투자로 포함하거나 계약서 및 공식 문서를 통한 전송설비 비율만큼만 정보기술부문 투자로 포함합니다.

첨부 1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부문 자산 분류표

※ 정보보호 공시의 '정보기술부문'은 '정보보호부문'을 포함함에 따라 모든 정보보호부문 자산은 정보기술부문 자산에 포함하여 산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명		
пет	서버 * OS 기준 구분	Unix	• 유닉스 OS(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서버		
		x86	• 위도우(MS Windows) 및 리눅스 기반 OS를 사용하는 서버		
		기타	• 위의 분류에서 제외된 서버 장비		
	스토	스토리지	• 데이터가 저장되는 외장 스토리지		
	리지	NAS	• 네트워크 공유 스토리지		
		기타	• 위의 분류에서 제외된 스토리지 장비		
	백업 장비	테이프 라이브러리	• 다수의 테이프 카트리지를 가진 대용량 고속 백업용 장비		
컴퓨팅 장비		VTL	• 가상 테이프 라이브러리(Virtual Tape Library), 가상화 기술을 통하여 디스크를 테이프처럼 인식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장비		
		기타	• 위의 분류에서 제외된 백업 장비		
	기반시설	영상·음향설비 (전산실)	• 전산실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 화상회의, 음향설비 등		
		소방설비(전산실)	• 전산실에서 사용되는 스프링클러, 가스소화설비, 시스템 등		
	기타 컴퓨팅 장비	PC(사무용)	•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개인용 데스크탑, 노트북 등		
		입출력장치	• 스캐너, 프린터, 플로터, 팩스 등		
		전원·공조장치	•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함께 활용되는 UPS, 항온 항습기 등		
		기타	• 위의 분류에서 제외된 하드웨어		
	교환설비		 유선망: Voip교환기, BCN교환기, 지능망교환기, IP_PBX,IP기반교환기, CMTS, Circuit교환기(TDM 등) 무선망: 3G데이터, 4G교환기(MME, MSC, IGS, AuC, PGW, SGW, IMS망, SMSC, AAA, 과금, HLR/HSS, MGW, TAS, EIR 등), 부가서비스망, 2G, 3G음성 MSC교환기(Circuit 기반) 		
정보 통신 장비	전송설비		유선망: COT-RT, 광단국장비(가입자-국사), 국간전송장비, 라우터, 스위치, 방송저장장치, HFC망 관련 전송장비 무선망: BSC, RNC, 교환국 간 전송, 라우터(백홀 라우터 포함) * 가입자댁 내 설비(모뎀, 셋톱 박스, AP) 제외 ** 데이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지국 장비는 포함, 음성통화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지국 장비는 포함, 암성통화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지국 장비는 제외		
	정보처리설비		• 망 관리 시스템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명		
	전송장비		• 통신회선(광케이블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 철도망· 우정망·금융망 또는 지자체자가망 등 통신사망을 임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기관만 해당 * WDM, ROADM, MSPP, 캐리어이더넷(PTN) 장비 등		
	스위치	L2	• 서로 다른 데이터링크 간 MAC 주소로 스위칭하는 소규모 워크그룹 스위치 장비		
		L3	•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IP 주소로 스위칭하는 장비로 라우팅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또는 스위칭 용량(switching capacity) 720Gbps 이하인 L3스위치(상세규격에서 확인 가능)		
		L4	•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서비스 포트로 스위칭하는 장비로 전송계층 정보(웹, FTP 등)0 따라 트래픽을 스위칭할 수 있어 부하분산(load balancing) 기능까지 제공하는 장비 네트워크 보안 스위치도 해당		
네트워크		백본	• 다수의 워크그룹 스위치 노드가 모이는 중심에 위치하는 스위치, 또는 스위칭 용량 720Gbps 이상의 L3스위치		
장비		기타	• 위의 분류에서 제외된 스위칭 장비		
	라우터		• 이기종의 네트워크(망) 간 연결을 위한 장비 • PSTN망·ATM망·이더넷망 등을 연결하는 장비		
	무선장비		• 일정 공간에 WiFi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선망을 구축하는 장비로 WiFiAP(무선공유기) 등이 해당 * WiFiAP, AP컨트롤러(APC), WIPS, 무선랜 인증장비 등		
	기타 네트 워크 장비	VolP용 장비	• IP망을 기반으로 음성 또는 영상 등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장비 • IP교환기, VoIP용 게이트웨이, SBC(SessionBorderController), 콜센터상담앱 (소프트웨어), 그 밖의 VoIP용 장비 등 포함		
		네트워크NMS	• 네트워크 운영·관리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 이기종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성능·장애 정보를 통합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기타	• 위의 분류에서 제외된 통신장비		
	시스템 소프트 웨어	운영체계	•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운영을 도맡아 관리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	• 컴퓨터 상호간에 접속하여 2개의 장치 사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소프트 웨어	• 사용자가 컴퓨터를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프로그램		
소프트 웨어		시스템관리 소프 트웨어	•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묶인 대규모의 시스템에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관리, 미들웨어 등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미들웨어	•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자원을 불러오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가운데 놓인 중간자		
	개발용 <u>소프트</u> 웨어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컴퓨터의 명령어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프로그래머가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명		
	개발용 <u>소프트</u> 웨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용 도구	 개발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에 지원되는 도구 		
		프로젝트 관리용 소프트웨어	•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개발할 때 발생하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DBMS	•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보관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소프트 웨어	응용 <u>소</u> 프트 웨어	기업관리 소프트웨어	• 기업의 기간업무를 통합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과학용 소프트웨어	 과학적 데이터의 처리나 과학적 문제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용 소프트웨어	• 모든 분야의 생활 활동의 전반적인 전체 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업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티	- 소프트웨어	• 위의 분류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		
		웹 방화벽	• 다양한 형태의 웹 기반 해킹 및 유해트래픽을 실시간 감시하여 탐지하고 차단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방화벽	•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유해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보안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IPS)	• 네트워크에서 공격 서명을 찾아 내 자동으로 조치를 취하여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중단시키는 보안 솔루션		
		디도스 차단 시스템	•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 전용차단시스템		
	네트 워크 보안	통합보안 시스템(UTM)	• 다중 위협에 대하여 보호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보안 제품		
		가상사설망 (VPN)	• 인터넷망 또는 공중망을 사용하여 2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가상의 터널을 만들어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		
정보 보안 제품		네트워크접근제어 (NAC)	•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접속단말의 보안성을 강제화할 수 있는 보안 인프라. 허가되지 않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등이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것을 차단하여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솔루션		
		무선네크워크 보안	• 무선을 이용하는 통신네트워크상에서 인증, 키 교환 및 데이터 암호화 등을 통하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가상화 (망 분리)	• 조직에서 사용하는 망(네트워크)을 업무 및 내부용 망(인트라넷)과 외부망(인터넷)으로 구분하고 각 망을 격리		
	시스템 (단말) 보안	시스템 접근통제(PC 방화벽 포함)	•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파일 유출방지, 감시기능, SMTPMail, WebMail 등을 통한 파일 유출 방지, 감시기능, 프린터 인쇄 모니터링 기능 등 자료 유출을 보안하는 다양한 기능		
		안티멀웨어 (anti-malware)	• 컴퓨터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접근권한을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인 멀웨어를 방지		
		스팸차단 소프트웨어	• 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 차단 또는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명	
	시스템	보안운영체제 (Secure OS)	• 컴퓨터 운영 체제의 보안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체제 내에 보안 기능이 추가된 운영체제	
	(단말) 보안	APT 대응	• APT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모바일 보안	• 모바일 서비스상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	
	콘텐츠 (데이터)/ 정보유출 방지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접근통제)	•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인가되지 않은 변경, 파괴, 노출 및 비일관성을 발생시키는 사건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	
		데이터베이스 암호	• 데이터의 실제 내용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은폐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	
		보안 USB	• 사용자 식별, 지정 데이터 암복호화, 지정된 자료의 임의복제 방지, 분실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삭제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보안 컨트롤러가 있는 휴대용 메모리 스틱	
	보안	디지털 저작권관리 (DRM)	• 웹을 통하여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안전 분배와 불법 복제 방지	
		네트워크 DLP	• 사용자의 고의 또는 실수, 외부해킹, 멀웨어 등을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유출을 콘텐츠 수준에서 막는 기술	
정보 보안		단말 DLP	• 사용자의 고의 또는 실수, 외부해킹, 멀웨어 등을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유출을 단말 수준에서 막는 기술	
제품	암호/ 인증	보안스마트카드	• 일반카드와 달리 반도체 칩을 내장한 스마트카드	
		하드웨어토큰 (HSM)		• 전자 서명 생성키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할 수 있고, 기기 내부에 프로세스 및 암호 연산장치가 있어 전자 서명키 생성, 전자 서명 생성 및 검증 등이 가능한 장치
		일회용 비밀번호 (OTP)	• 로그인할 때마다 새로운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보안 시스템	
				• 실체의 식별자와 공개키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공개키 정보는 한 실체에 대한 데이터와 이 실체를 위한 공개키로 제한되며, 인증기관, 실체, 공개키 또는 관련 알고리즘에 관한 다른 정적인 정보
				 통합접근관리: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및 일반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자원의 접근인증과 이를 기반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관리하는 통합인증관리 솔루션 싱글사인온: 이기종의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다른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1회 인증만으로 전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
		통합계정관리 (IM/IAM)	• ID와 패스워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역할 기반의 사용자 계정 관리 솔루션	
보안 통합보안관리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가상사설망 등 각종 보안시스템 및 결관리 (ESM)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가상사설망 등 각종 보안시스템 및 주요 시스템 장비를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명		
	보안 관리	위협관리 시스템(TMS)	• 국내외 최신 취약성 정보와 보안 트렌드, 정밀 분석된 네트워크 트래픽 및 공격 형태를 상관 분석하여 사이버 공격을 예측하고 판단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협관제 및 대응 시스템		
		패치관리 시스템(PMS)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포되는 보안 패치 파일을 원격에서 자동으로 설치 관리해 주는 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RMS)	관리 대상 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도를 관리하며 위협 분석 기능뿐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실을 분석하고 주요 자산 평가 기능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정보 보안 제품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자료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료를 미리 다른 곳에 임시로 보관해 두었다가 원래 상태로 복구해 주는 관리 시스템		
		로그 관리/ 분석 시스템	• 로그를 실시간 수집·저장·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		
		취약점 분석 시스템	악성코드 민감도,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설정, 열린 포트 같은 컴퓨터 시스템의 알려진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 정보기기 내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가 법적 증거가 되도록 자료를 수집·보관·분석 보고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기타 정보보안 제품	• 위의 분류에서 제외된 제품		
	CCTV	CCTV 시스템	•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송시스템, 카메라, 모니터, 디지털비디오녹화기(DVR),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 *(예) 저장장치, 카메라, 주변장비 영상감시관제 소프트웨어 및 장비, 지능형 솔루션, 액세서리		
	바이오 인식	얼굴인식 시스템	• 사람 얼굴의 대칭적인 구도, 생김새, 머리카락, 눈의 색상, 얼굴 근육의 움직임 등을 분석하여 얼굴의 특징을 알아 내는 생체인식 기술		
		지문인식 시스템	 지문인식 전용 센서를 이용하여 지문의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여 지문에 있는 디패턴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 		
		홍채인식 시스템	홍채의 모양과 색, 망막모세혈관의 형태소 등을 분석하여 사람을 인식하는 생체인식 기술		
물리 보안 제품		정맥인식 시스템	•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흐르는 정맥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인식하는 생체인식 기술		
세품		기타 (음성인식 및 기타)	• 위의 분류에서 제외된 시스템		
	접근제어		• 주요 관공서, 군 주요 시설, 금융기관, 회사, 연구실 등의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곳 또는 이용자의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곳에서 ID 카드 등의 인식장비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예) 카드&리더(번호/마그네틱), 시큐리티게이트 및 소프트웨어 등		
	알람모니터링		• 온도, 압력, 방사선 세기 등의 물리량이나 화학량을 검지하여 신호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화시키는 장치 *(예) 적외선/레이저/진동/장력센서, 모션디텍터/침입 탐지장비 등		
	기타 물리보안제품		• 위의 분류에서 제외된 제품		

첨부 2 정보보호서비스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항목	
정보보호 서비스	정보보안 서비스	유지관리	• 제품 업데이트, 기술지원 등	
		보안성 지속 서비스	• 보안 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위협/사고분석, 보안기술 자문, 보안성 인증(KCMVP 등) 효력 유지	
		보안관제	원격관제 서비스 파견관제 서비스	
		보안컨설팅	 인증(ISO, ISMS 등) 기반보호 진단 및 모의해킹 개인정보보호컨설팅 종합보안컨설팅 정보감사(내부정보 유출방지 컨설팅 등) 	
		교육·훈련	• 교육·훈련 서비스	
		인증서비스	• 공인·사설 인증서비스	
	물리보안 서비스	• 출동보안서비스		
		• 영상보안서비스		
		• 기타 보안서비스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